

감리지적사례 FSS/2106-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이하 ‘종속회사’)를 설립한 이후 투자액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이후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손실 심화로 인해 ’16년 중 주된 영업 변경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고, ’17년 기준 영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

회사는 ’16년 종속회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로 인지하지 못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7년 중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손상평가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포함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한 후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16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적용하여 손상검토를 수행(’17년)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에 따르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41 및 45에 따르면 현금유출 추정 시에는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가치에는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 가능액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거나, 비합리적인 가정(재투자 없는 영구 현금유입, 현금유출 미반영, 다른 업종 기준의 할인율 적용 등)으로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손상차손을 미인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손실이 누적된 종속회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미수행한 사실을 간과하였다. 또한 회사가 향후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가정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그 가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는 매년 수행되어야 하며, 회수가능액 추정 시에는 그 가정의 합리성(추정 현금흐름 및 할인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